

서울고등법원 2021. 5. 27 선고 2020나20302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
담당변호사 박성규

피고, 피항소인 A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현
변 론 종 결 2021. 4. 29.
판 결 선 고 2021. 5. 27.
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8. 21. 선고 2018가합11223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B 사이에 2014. 1. 17., 2014. 2. 12., 2014. 4. 1.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~제5면 제11행의 “원고가 .. 어렵다.”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『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B 사이의 증여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M은행, N은행,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E은행, D, M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만으로 B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갑 제2호증, 을 제2 내지 6, 9, 11호증의 각 기재, 제1심법원의 M은행에 대한 2019. 5. 13.자 사실조회 결과 및 D에 대한 2019. 7. 10.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, 이 법원의 D에 대한 2021. 1. 27.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와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고의 M은행 계좌(O)에는 2013. 10. 21. 기준 잔액이 30,882,613원이었는데 2013. 10. 23.부터 2014. 1. 16.까지 피고뿐만 아니라 친척 또는 지인인 P, Q, R, U 등으로부터 수차례 입금이 이루어져 2014. 1. 16. 기준 잔액은 516,825,712원에 이르렀고, 피고의 다른 M은행 계좌(S)에 2013. 11. 18. 친척인 T로부터 250,000,000원이 입금되어 그 무렵 그 잔액이 260,921,009원이었는데,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각 돈이 B의 돈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,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위 M은행 계좌(O)에서 2014. 1. 16. 500,000,000원과 14,640,000원을 법무사 V의 계좌로 입금하였고, 위 V은 위 합계 514,640,000원으로 2014. 1. 17.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매각대금 455,800,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세금 등 명목으로

58,400,000원을 지급하였던 점(나머지 매각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W 주식회사로부터 1,000,000,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), ③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‘매매대금은 300,000,000원(계약금 150,000,000원, 잔금 150,000,000원)이고, 계약금은 매수인(피고)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2014. 1. 22.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, 피고 명의의 위 M은행(O) 계좌에는 2014. 1. 17.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보관금 계좌로부터 160,192,592원이 입금되었다가 2014. 1. 22. 150,000,000원이 출금된 점, ④ 그 밖에 피고의 과거 근로소득과 보험해약금 액수가 상당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친척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차용하고 당초 보유하던 기초자금 등을 보태어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.

2. 결 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차문호, 판사 장준아, 판사 김경애